

1. 개정이유

기상현상에 관한 각종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시 사용자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기상현상 관련 신청 서식 개선(별지 제9호·제10호서식)

- 정확한 민원 발급을 위한 용어 정비 및 민원 신청 항목 보완
- 편리한 민원자료 발급 안내를 위한 전자적 처리 가능 문구 추가

나. 기상현상증명서 서식 개선(별지 제11호서식)

- 성명, 전화번호, 주소 등 개인정보 표출 항목 삭제
- 일반 공적증명서 양식에 맞추어 가로형 서식에서 세로형 서식으로 전환
- 정확한 민원 발급을 위한 용어 정비
- 위변조 방지를 위한 QR코드 도입 등 모바일 서비스 기반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0. 2. 3. ~ 3. 16.) 결과, 입법예고 전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부령 제 호

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9호, 제10호 및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기상현상증명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일
신청인	상호	사업자등록번호(생년월일)	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(FAX/E-mail)	
	주소		
신청사항	분류	기간	
	기상요소		
	지점	지점정보 포함[]	
	용도 및 제출처	발급부수 부	

「기상법」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의 증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 상 청 장
위탁받은 자()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아래 참조
------	-----	--------------

수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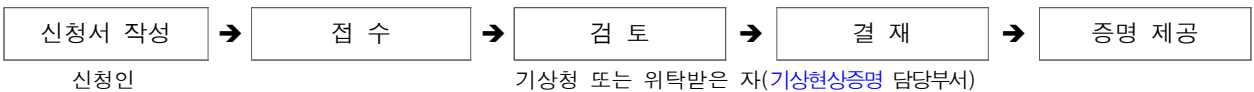
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,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. 다만, 기상청장 또는 위탁 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
비고: 수수료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작성요령

분류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기상자료를 적습니다.(예: 종관기상관측, 방재기상관측, 항공기상관측, 기상특보 등)
기상요소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기상요소의 종류를 적습니다.(예: 일별강수량, 일별평균기온, 일기상통계표, 호우주의보 등)
지점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지점(지점번호 또는 특보구역)명을 적습니다.(예: 서울, 부산, 서해중부해상 등)

처리절차



기상자료제공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일
신청인	상호	사업자등록번호(생년월일)	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(FAX/E-mail)	
	주소		
신청사항	분류	기간	
	기상요소		
	지점		
	용도	자료종류 및 발급부수	

「기상법」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상자료의 제공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 상 청 장
위탁받은 자()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아래 참조
------	-----	--------------

수수료

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,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. 다만, 기상청장 또는 위탁 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
비고: 수수료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증명 제공 기상청 또는 위탁받은 자 (기상자료제공 담당부서)
---------------	---	-----	---	-----	---	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

기상현상증명서



증명사항	분류	기간
	기상요소	
	지점	

본 문

「기상법」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상현상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기 상 청 장
위탁받은 자()

직인

담당자	국가기후데이터센터
전 화	02-2181-0233

조회시각: 2019.01.01 00:00:00

*상기 자료는 품질관리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음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◆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,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나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위·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